

2016. 9. 9.(금)

제350회 임시회

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의회운영위원회

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2016년 9월 9일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윤흥창 의원 외 6명
- 나. 발의일자 : 2016. 9. 7.
- 다. 회부일자 : 2016. 9. 8.
- 라. 상정일자 :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
2016. 9. 9. 상정 · 의결 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: 윤흥창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는 100년 미래 먹거리라며 7년 여 동안 공을 들인 항공정비(MRO)산업이 최근 충청북도와 투자협약(MOU)을 체결한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항공정비 산업이 중대기로에 있음.

-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항공정비산업을 위해 수 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,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고 항공업체의 포기로 그동안 조성한 항공산업단지 및 향후 조성 계획중인 단지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.
-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 점검을 위한 현황조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#### **나. 주요내용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하여 “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” 를 구성한다.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-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-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**3. 참고사항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수석전문위원 박 준 순)

### 1

####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

- 특별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,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항공정비산업(MRO)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

####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

- 충청북도는 미래 100년 먹거리로서 항공정비산업(MRO)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 폴리스지구에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나, 핵심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.

## 〈MRO산업 추진현황(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)〉



- 위 치 : 청주시 내수읍 입동·신안리
- 사업기간 : 2013 ~ 2020
- 사업규모 : 473,713㎡(14만평)  
- 1지구 153천㎡(46천평), 2지구 321천㎡(97천평)
- 유치대상 : 항공정비·부품제조 및 연관산업

- 현재까지 MRO추진 사업비로 2015년말까지 부지매입비 122억 원을 포함한 총 188억 원, 2016년에는 1지구 조성공사 등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총 2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,569억 원에 달함.
- 충북도는 MRO산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0년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와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이후 2014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경남 사천으로 바꾸고, 이런 상황에서 충북경자청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접촉해 온 아시아나항공 마저 협약체결(2015.1월) 1년 8개월 만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오는 등 사업추진이 중차대한 시기에 있음.
- 이에 현시점에서 충청북도의 항공정비(MRO)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올바른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‘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 특별위원회’ 구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생략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생략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

-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.

#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9월 7일

발 의 자 : 윤홍창, 김학철, 박병진,  
박봉순, 박한범, 임병운,  
정영수

## 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하여 “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” 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다.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
라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는 100년 미래 먹거리라며 7년 여 동안 공을 들인 항공정비(MRO)산업이 최근 충북도와 투자협약(MOU)을 체결한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항공정비산업이 중대기로에 있음.

- 또한 충청도에서는 항공정비산업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, 뚜렷한 성과가 없고 항공업체의 포기로 그동안 조성한 항공산업단지 및 향후 조성계획중인 단지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.
-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 점검을 위한 현황조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### 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



## 관련법규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8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**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